

(주)엘아이텍(이하 '회사'라고 한다)은 정보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른 차주와 운송주선사의 편의를 위해 차주 또는 운송주선사가 예치금을 회사에 맡기고, '회사'가 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, 본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약관 또는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1. 목적과 취지

- ① 예치금이란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목적에 사용하고자, 이용자가 맡겨 '회사'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금전채권을 의미하며, 이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편의를 위해 '회사'가 대신 처리해 주기 위함이다.
- ② '회사'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고 그대로 처리하며,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 '회사'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 즉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입력, 등록 내용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용자는 '회사'에 책임은 물을 수 없다. 단, '회사'(또는 임직원)의 고의,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2. 예치금의 감소(채무변제 및 출금)

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고 약정하였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'회사'가 허락한 경우에 '회사'는 이용자의 예치금에서 아래 각 항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'회사'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된 금원을 예치금잔액에서 차감한다.

- ① 이용자의 예치금의 반환 신청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경우
- ② 약관 또는 '회사' 제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(가상계좌 입금 및 실시간 출금에 따르는 은행수수료 등)을 지급하는 경우
- ③ 이용자가 제3자에게 지급할 채무 변제(선착불 수수료 지급, 운송료 지급 등 기타 '회사'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)를 '회사'가 대신해 예치금에서 처리(선착불 수수료 지급, 운송료 지급 등)하는 경우
- ④ 기타 이용자와 '회사'가 약과나 또는 규정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치금에서 지급, 차감하기로 한 금액(이용자가 '회사'에 지급해야 할 금원 또는 '회사'와 제휴한 기관, 업체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'회사'가 일괄 처리하기로 한 금원을 포함한다.)

3. 예치금의 증가(채권수령 및 입금)

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고 약정하였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'회사'가 허락한 경우에 '회사'는 이용자의 예치금에 아래 각 항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'회사'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원을 예치금 잔액에 합산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.

- ①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용자(또는 제3자)가 직접 입금한 금액(금융기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)
- ② '회사'의 자동정산시스템, 본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
- ③ 2항을 통해 처리된 금원 중에서 취소, 해지 등의 사유로 반환되는 금액(예, 선금금의 환급 등)
- ④ 기타 이용자와 '회사'가 약관, 규정에 따라 예치금에 합산하기로 한 금액('회사'가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제3자가 '회사'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포함한다.)

4. 예치금 서비스제공

- ① '회사'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치금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, '회사'는 사정, 방침의 변경에 따라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, 중지할 경우 10일 이내에 예치금을 반환한다.
- ② 예치금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이용은 무상으로 하되,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, '회사'는 이용자의 부담금액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다.
- ③ '회사'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각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. 예치금을 통해 발생될 은행이자 는 서비스제공의 공통비용이나 ②항의 이용자부담액을 초과하는 비용, 기타 서비스 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'회사'가 결정, 처분한다.
- ④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예치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는 '회사'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5. 예치금의 반환

- ① 정보망서비스를 계속 이용 중에 이용자가 예치금을 반환 받으려면 6항의 실시간 지급이체(핀뱅킹) 서비스를 이용해 반환 받아야 한다.

② 이용자의 정보망서비스 해지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는 ‘회사’가 직접 반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, ‘회사’는 이용자가 등록한 계좌로 10일 이내에 반환한다.

6. 실시간 지급이체(핀뱅킹)을 이용한 반환

- ① ‘회사’는 예치금의 반환을 위해 은행의 실시간 지급이체(핀뱅킹)을 이용하여 예치금을 반환한다.
- ② 실시간 지급이체(출금)을 위한 금융기관, 효성FMS사 등의 이체관련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 이체관련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하되,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지한다.
- ③ 서비스 이용시간,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, 절차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 관련기관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되, ‘회사’가 서비스와 관련한 시스템보완, 업무 준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별도로 공지한다.
- ④ 이용자가 실시간 출금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‘회사’에 등록한 계좌로 반환하고, 등록 계좌로 반환된 경우 이용자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.

7. 예치금반환계좌의 등록 방법

- ①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예치금 반환계좌를 사전에 ‘회사’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 ‘차주’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도 본인 명의로 간주한다. 통장사본 하단에 [예치금반환계좌 등록을 신청함. 년 월 일, 이용자ID, 본인 성명, 날인(서명)]을 기재한 후 통장명의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팩스로 신청한다.
- ②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등록할 수 없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사례에 한해 신청한 경우에 ‘회사’는 허용할 수 있다. 통장사본 하단에 [위 사람은 본인의 (가족관계)이며, 위 계좌로 예치금반환계좌 등록을 신청함. 년 월 일, 이용자ID, 본인 성명, 날인(서명)]을 기재한 후 본인 및 통장명의로 각각 신분증사본, 아래의 추가서류를 첨부해 팩스로 신청한다.
 - ※ 개인사업자인 경우, 가족 명의로 계좌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 - ※ 법인인 경우,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에 한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
- ③ 이용자는 아래의 계좌를 예치금반환 계좌로 어플 및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. 단, 아래 계좌가 이용자 본인 명의로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※ ‘차주’의 정보이용료 자동출금 계좌
 - ※ ‘운송주선사’가 사전에 등록한 선착불수수료 수령계좌
- ④ 이용자는 어플을 통해 본인명의로 휴대폰으로 본인의 계좌를 간편 등록할 수 있다. 이때, 계좌 실명조회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8. 이용자의 의무

- ① ‘회사’는 등록된 계좌로 이체하므로 이용자는 예치금 반환 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등록 및 정보망이용과정에서 확인하고, 예치금 반환 요청시에 거듭하여 예치금 이체될 계좌를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. 이용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‘회사’에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이용자는 ‘회사’의 업무와 관련된 것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예치금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‘회사’에게 요구할 수 없다.
- ③ 이용자는 ‘회사’의 업무와 관련된 것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예치금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‘회사’에게 요구할 수 없다.
- ④ 만일 위법행위를 위해 허위로 계좌를 등록하거나 가상계좌 및 예치금 서비스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, 이용자의 고의로 간주하며, 이용자가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지며, 계좌명의로자나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
위 예치금 서비스 규정에 동의하며,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